

## 학생생활지도위원회규정

제정 : 1995.03.01  
개정 : 2014.07.01  
개정 : 2020.03.01  
개정 : 2021.12.01  
개정 : 2022.10.01  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도의심을 양양하고 선행을 권장하며 좋은 교풍을 확립하여 민주사회의 올바른 일꾼이 되도록 지도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라 칭한다.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학생취업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, 국제교육원장, 학생생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③ 위원장은 업무를 통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간사는 학생지도 담당자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2. 학원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3. 학생의 풍기단속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

4. 학생 선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5.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(근신 이하의 징계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징계사항)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전문위원 위촉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추진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업무관리)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입학학생취업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·시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  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